

기 후 변 화 법 제

ISSUE BRIEF

지역탄소중립
이슈브리프

2022-01호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자치법규 개선 방향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정연

녹색전환연구소

박진미

녹색전환연구소

기후 변화 법 제

ISSUE BRIEF

지역탄소중립
이슈브리프

2022-01호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자치법규 개선 방향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정연

녹색전환연구소

박진미

녹색전환연구소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자치법규 개선 방향

CONTENTS

I.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03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2) 환경부 「탄소중립기본조례」(참고조례안) 검토	
II.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07
1)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과 특징	
III.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11
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과 특징	
IV. 탄소중립기본조례 및 자치법규 개선 방향	18
1) 시민사회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운동	
2) 탄소중립기본조례 및 자치법규 개선 방향	



지역탄소중립 이슈브리프 제1호는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제1회 지역탄소중립 제도 구축 연속포럼 <지역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조례 제정>(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주최, 녹색전환 연구소 주관, 2022년 6월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의 발표문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자치법규 개선 과제」(이정필, pp.6~41.)를 재구성하고, 지정 토론문과 종합토론 속기록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자치법규 개선 방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정연

녹색전환연구소

박진미

녹색전환연구소

I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감축과 적응),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정의로운 전환), 경제와 환경의 조화(녹색성장)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법에 2030년 2018년 대비 35% 이상 설정, 시행령에 40%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시책,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적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적 위상을 갖는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제3조(기본원칙)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규정한다.

- ①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 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 마련
- ②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고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고려
- ④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정기적 점검과 이행성과 평가
- ⑤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의 감축과 적응에 필요한 조치 강구
- ⑥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⑦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추진, 투명한 정보 제공, 국민과 사업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보장
- ⑧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국제협력 추진
- ⑨ 전문인력 양성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폐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비해 훨씬 강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와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의무규정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법 제11~13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관 조례·행정계획 통보 및 지방위원회 검토(법 제14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법 제24조)
- 탄소중립 도시(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요청)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법 제36조)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법 제40조)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법 제42조)
- 지방의회 보고(법 제78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법 제79조)

(2) 임의규정

-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제22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요청)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법 제53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선정 시·도지사 설립 가능)
-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 및 특례(법 제59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법 제65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법 제68조)
- 기후대응기금 설치(법 제6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법 제81조)

2) 환경부 「탄소중립기본조례」(참고조례안) 검토

2022년 3월, 환경부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참고조례안)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이 참고조례안에 대해 “각 지역에서 조례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참고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활용하도록 당부했다.¹⁾ 「탄소중립기본조례」(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1 환경부, 「(○○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참고조례안)과 「(○○시·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참고조례안), 2022.03.

표 1 | 환경부 「탄소중립기본조례」(참고조례안)의 주요 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간사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역 물관리 사업,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부칙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적용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참고조례안은 서로 구성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조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만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광역 사무에만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참고조례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규정과 임의규정 조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선 의무규정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관 조례·행정계획 통보 및 지방위원회 검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지방의회 보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관련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다음으로 임의규정 중에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 및 특례, 기후대응기금 설치 관련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참고조례안을 참고하되, 「탄소중립기본법」을 적극 해석하여 관련 내용을 탄소중립기본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아가 2030년 감축목표 역시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어렵고,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똑같이 기술할 경우 법령 개정 시 법령과 조례의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감축 여건, 기후위기 적응 문제 등을 특화하여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참고조례안을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는 입장이다.²⁾

II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1)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2022년 6월 20일 기준, 광역 탄소중립기본조례가 제정된 5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1.12.3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4.20. 제정),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2022.04.26. 제정),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5.13. 제정),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5.19. 제정). 이 중 충청남도의 경우, 탄소중립 지원센터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2022.05.18.) 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가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과 책무 그리고 의무·임의규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감축목표, 기본계획, 위원회,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감축 시책, 적응 시책, 지원조직, 기금 등의 항목에 따라 조항 포함 여부 및 적절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예로 들면, 충청남도 기본조례(제6조)는 단순히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만 규정한다(‘미흡’ 평가). 전라남도 기본조례(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기간(5년마다 10년의 계획기간)까지 명시한다(‘보통’ 평가). 광주광역시 기본조례(제8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기간에 더해 기본계

2 송인준,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자료집 토론문, p.77.

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적절 평가’).³⁾

감축 시책과 적응 시책 항목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확인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관련 주요 내용들이 제4장(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20~30조)과 제5장(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31~37조)에 걸쳐 독립적인 조항으로 구성된다(‘적절’ 평가). 반면, 충청남도의 기본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제15조)에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기준 적용,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노력,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장려, 친환경운동의 권장, 교육 및 홍보 등 대응사업의 종류와 범위만 간단히 제시한다(‘미흡’ 평가). 세종특별자치시 기본조례 역시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제15조)에서 기후위기 적응사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대응사업, 탄소흡수원 확대사업, 순환경제의 활성화 사업, 에너지전환 사업,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지원 사업 등 사업범위만 언급할 뿐이다(‘미흡’ 평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2]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현황 및 평가

	감축 목표	기본 계획	위원회	정의 전환	녹색 성장	감축 시책	적응 시책	지원 조직	기금	유관 조례
충청	-	▽	○	-	△	▽	▽	-	-	전환기금 전환지원
세종	-	○	○	-	△	▽	▽	○	-	-
광주	40%~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기후기금

* 주: ○(적절), △(보통), ▽(미흡), -(해당 없음)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검색일: 2022.06.20.

3 ①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②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③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④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⑦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⑧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⑨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⑩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는 대체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만, 2030년 감축목표는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광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지향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기본조례의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11조(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자원순환시행계획 등 57개에 이른다.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의 주요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의 주요 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공공기관·사업자·시민 등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제3장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등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연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사무국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공공부문 목표관리,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탄소중립도시 추진, 에너지 전환 시책의 추진,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 확충, 자원순환 활성화, 녹색식생활 활성화,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 구축 등,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축산의 전환 촉진, 시민 건강관리
제6장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사업전환 지원,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지역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등
제7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탄소중립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협력체계의 구축,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 성과관리
제8장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광주광역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의회 보고 등, 탄소중립백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행규칙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과 특징

탄소중립기본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상위 조례 성격을 갖는 반면, 기본조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별 조례 또한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유관 조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조례가 제정된 충청남도과 전라남도, 그리고 이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유의미한 조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1.02.22. 제정)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2022.04.11. 제정)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비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지원위원회, 지원계획, 노동전환지원·훈련센터 등)
-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2022.04.11. 제정)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종합계획, 사업지원 등)

(2) 전라남도

-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2.03.31. 제정)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2021.12.30. 제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2022.01.12. 제정)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기본계획, 추진위원회 등)

충청남도의 경우, 석탄발전소를 비롯한 탄소다배출·에너지다소비 기업의 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에 특화된 일련의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조례만이 아니라 유관 조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⁴⁾ 마찬가지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이 빨리 시작된 편이다. 2022년 6월 20일 기준, 기초 탄소중립기본조례가 제정된 16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09.16. 제정),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2021.11.05. 제정)
-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1.12.23. 제정)

4 정부와 국회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1.12.23. 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12.29. 제정)
-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12.30. 제정)
-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2.02.25. 제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2.02.28. 제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3.31. 제정)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2022.04.19. 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4.21. 제정)
-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4.21. 제정)
-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4.27. 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5.06. 제정)
-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5.16. 제정)
-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05.20. 제정)

대부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녹색성장기본조례나 기후변화대응조례를 폐지하고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충청남도 태안군은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유지한 채 탄소중립기본조례를 별도 입법한 경우에 속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이라는 조례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금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기본조례에 그 구체적인 내용(제4장 기후위기 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조례와 마찬가지로 감축목표, 기본계획, 위원회,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감축 시책, 적응 시책, 지원조직, 기금 등의 항목에 따라 조항 포함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면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 현황 및 평가

	감축 목표	기본 계획	위원회	정의 전환	녹색 성장	감축 시책	적응 시책	지원 조직	기금	유관 조례
서울 도봉구	-	▽	-	-	-	△	▽	-	-	녹색성장
충남 태안군	-	▽	-	-	-	△	▽	-	-	녹색성장 전환협의
대전 서구	35%~	△	△	-	▽	△	▽	○	-	-
경기 광명시	-	○	▽	▽	▽	▽	▽	-	▽	-
서울 서대문구	35%~	○	○	▽	▽	○	△	○	○	-
대구 북구	-	▽	-	-	-	△	▽	-	-	-
경기 하남시	-	○	▽	▽	▽	▽	▽	△	△	-
대구 수성구	-	△	-	-	-	-	▽	-	-	-
서울 구로구	-	○	○	△	▽	○	○	○	-	-
경기 과천시	-	○	○	-	-	△	△	-	-	탄소인지
대구 달서구	-	△	○	▽	▽	△	▽	○	-	-
전남 여수시	-	▽	-	△	-	△	▽	▽	-	마을조성
강원 속초시	-	○	○	-	▽	△	○	○	-	-
서울 성동구	-	○	○	-	-	△	△	-	-	-
경기 성남시	40%~	△	○	-	-	△	▽	○	○	-
강원 원주시	-	△	○	-	-	△	▽	○	○	-

* 주: ○(적절), △(보통), ▽(미흡), -(해당 없음)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검색일: 2022.06.20.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일부를 제외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탄소중립기본조례의 완성도가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감축 시책에 비해 적응 대책 및 시책 관련 조항이 허술한 편이다. 감축 시책 중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위원회, 지원조직, 기금 관련 조항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가 많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본조례의 제8조(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표현을 선택한 충청남도 태안군과 대구광역시 북구의 기본조례도 마찬가지로인데, 기본계획에 시기, 기간, 목표 등의 구체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본조례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의하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유일하게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에는 위원회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 광명시의 기본조례는 총 13개 조에 불과하다.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탄소중립 이행 목표(제6조), 사업범위(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제9조),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제1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제11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제12조), 포상(제13조) 정도로 단순하다. 제7조(사업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설정 및 이행,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 추진, 정의로운 전환 사업 추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을 예시할 뿐이다.

경기도 하남시의 기본조례도 총 15개 조로 단순한 편이고, 광명시의 경우처럼 사업범위(제8조)에 사업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기본조례는 기본계획과 적응대책 수립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분야별 주요 시책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본조례는 제4장(온실가스 감축사업, 제15~24조)과 제5장(기후위기 적응 사업, 제25~30조)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임에도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제31조)을 포함한다는 점, 특히 “서울디지털단지, 공구상가 등 구로구만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이 지역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함을 언급한 점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라남도 여수시 기본조례의 제18조(정의로운 전환)도 일반론 수준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도 성남시는 2030년 감축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본조례의 제7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1항은 “모든 주민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을 의무 이행자로 한정하지 않고 권리 주체로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구로구는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기본조례의 주요 항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비롯한 몇몇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주요 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2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 등의 공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 조치
제4장 기후위기 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및 절차 등, 기금운용의 계획,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공무원,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의 결산
제5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등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재정지원 등, 협동조합 활성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구의회 보고 등, 참여활동에 대한 포상, 시행규칙

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과 특징

탄소중립기본조례가 제정된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마을 등의 유관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곳에서도 몇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03.30. 제정)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의 구성 및 지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1.04.09. 제정)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영향평가,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09.30. 제정)
탄소중립 추진,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도모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2021.11.08. 일부 개정)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신설)
-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1.12.27. 제정)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영향평가,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2.02.03. 제정)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2.02.25. 제정)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에 대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여주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2022.04.21. 제정)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규정(기본계획, 심의위원회, 읍면동 추진위원회, 지원센터 등)

IV 탄소중립기본조례 및 자치법규 개선 방향

1) 시민사회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운동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소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 탄소중립기본조례(안)를 제안하고,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친 후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를 마련했다. 2022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도 완성했다. 2022년 4월, 경기도와 수원, 고양, 남양주, 안성, 안산, 안양, 의정부 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조례(발안) 청구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탄소중립기본조례」(시민안) 주민조례 청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자치 법규 마련
- ②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위임사항 반영
- ③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기본조례」(시민안)의 연계성 확보 및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 고려
- ④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⑤ 시민·이해당사자들의 참여·숙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공론장 활성화
- ⑥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및 합의사항 반영

이러한 목적에서 성안된 「탄소중립기본조례」(시민안)는 기후위기 대응(감축·적응)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강조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거버넌스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그리고 경기도 이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데 노력했다. 이런 배경에서 2022년 4월, ‘송파기후행동’이 마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가 공식 청



구되어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서명기한 4월 1일~8월 3일).⁵⁾ 녹색당과 민주노총 역시 각각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이하 기후정의기본조례)를 발표했다. 녹색당이 제안하는 조례는 기후정의예산 20% 확보, 20년 이상 건축물 연간 3% 그린리모델링, 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 등의 강행규정이 담겨 있고, 민주노총 조례안에서는 노사교섭과 노정교섭, 고용유지와 공공성 담보 등 노동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강조된다.

표 6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의 주요 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의 책무,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비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이상),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회의 등, 분과위원회 및 도민정책참여단, 사무국 등
제4장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 분과위원회·도민정책참여단·사무국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순환경제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5 주민e직접(<https://www.juminegov.go.kr/>), 검색일: 2022.06.20.

구성	내용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지원, 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
제8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제9장 보칙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규칙

「탄소중립기본조례」(시민안)의 본래 취지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임의규정은 최소화하고, 구속력이 강한 규제적 성격의 강행규정을 적극 반영하도록 의도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등 지방자치권의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 건축, 교통 부문의 감축수단별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강행규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소극성을 보였다. 또한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따라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관’도 「탄소중립기본조례」(시민안)에 포함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및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의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위상을 위원회 심의 기능과 행정부서의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상했으나 실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최종안에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2) 탄소중립기본조례 및 자치법규 개선 방향

현재 제정된 탄소중립기본조례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구로구의 기본조례 정도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와



함께 지역의 지향과 여건을 일정 수준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자치법규 체계와 함께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탄소중립기본조례(또는 기후정의기본조례) 제·개정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능동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는 기본조례의 주요 조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관 조례를 포괄하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통해서 가능하다.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이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유관 조례를 제정하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건축, 교통, 폐기물, 농축산 분야 등의 주요 시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들의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력과 영향력이 강한 도시계획(조례·위원회)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둘째, 기본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쟁점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함을 이해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비전과 경로, 목표와 수단은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조례에 기술된 참여 거버넌스(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가 보다 민주적·개방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경상남도 ‘기후도민회의’,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도시광주연대’ 그리고 경기도 「탄소중립기본조례」(시민안)의 ‘도민정책참여단’, 충청북도의 ‘충청북도 탄소중립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등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법적 근거를 기본조례에 넣어야 한다. 조례 제정 과정 또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쟁점 확인과 종합 토론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정치적 공론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 행정·의회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참고 조례안이나 타지역의 조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포함하고 싶은 내용을 토론하고 조례 문구를 만들어보는 진전된 숙의의 조례 제정 과정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 자체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셋째, 기후변화대응계획 및 적응대책, 지역에너지계획 등 기존 법정계획이나 행정계획


을 통해 확인되고 전망되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현황을 참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주민의 권리 인정, 건강권 보장, 채식선택권 보장, 탈화석연료 금고 지정, 기후위기 심화 광고 규제 등의 조항을 기본조례에 포함하거나 개별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고려하기 힘든 지역의 특성과 지향을 반영하여 지역밀착형 혹은 문제 해결형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 결과, 기본조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추진주체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기본조례와 관련 위원회, 그리고 지역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기본조례의 제11조(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와 같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위원회 중의 하나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탄소중립이 하나의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진행되거나 칸막이 행정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경기도 「탄소중립기본조례」(시민안)와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기본조례의 제10조(추진상황 점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54조(탄소중립백서)에 따라 위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함께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포함한 백서를 매년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위상확립과 의무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현재의 실장·국장(광역), 과장·담당관(기초)이 아닌 부시장·부도지사(광역),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기초)이 맡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시행령 제72조 개정 사안).



다섯째,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의 자치권이 제한된 지방자치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권한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회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자치·분권 역제안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다. 지난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곧 실천연대의 구성도 이루어질 것이다. 실천연대가 지역 탄소중립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 정책과 사업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기후에너지 전문가가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급식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사례처럼, 아래로부터 촉발된 조례제정 운동의 성과와 교훈을 탄소중립기본조례(또는 기후정의기본조례) 제·개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민 발안·청구 조례(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발의 조례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하거나 기후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도 있다. 경기도 및 시·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례처럼,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토론, 실천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흐름에 맞춰 단체자치와 함께 주민자치에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참여예산 등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수단들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 1 회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연속포럼

지역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조례 제정

2022.6.7(화) 10:00~12:50

조례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탄소중립을 탄력적이고 연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법제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연구위원	
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기조발제	탄소중립 조례의 역할과 의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토론 (각10분)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김영희 변호사,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주민발안운동	장동빈 전)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 조례제정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차승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탄소중립 관련 조례 법제도 개선사항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기 후 변 화 법 제
**ISSUE
BRIEF**